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00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문정복 · 이기현 · 황정아
정을호 · 김문수 · 김선민
서영석 · 김 윤 · 전진숙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단서 중 “한의학 또는”을 “한의학·약학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평가 등) ① (생 략)	제11조의2(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 <u>한의학</u>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u>한의학·약학</u> 또는-----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